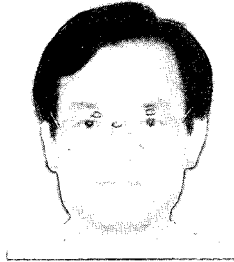


폐기물처리비 예치금제도에 대하여

안 영 재 / 환경처 폐기물제도과장



ㄷ

제조·수입업체는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어 그
역경로를 통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토록
하자는 것이 이 예치금제도의
기본요체이다.

ㄷ

1. 예치금제도의 의의

그동안 환경처, 경제부처, 관련업계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폐기물처리비 예치제가 '91. 9. 26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공포와 함께 확정·시행되게 되었다. 이 예치금제도는 부과금제도(Product Charge)와 함께 폐기물의 처리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으로서 일정한 제품을 선정, 그 제품이 사용되고 난후 폐기물이 되었을시 회수·처리 및 재활용케한 후 그 양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인데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위하여 외국에서도 흔히 채택·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기본취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제품의 제조·공급외에 폐기물의 회수·처리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조·수입업체는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어 그 역경로를 통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토록 하자는 것이 이 예치금제도의 기본요체이다. 즉, 이 유통경로는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제품의 사용후 폐기물로 되었을시 반대의 경로로 기업에게 되돌려져 적절히 처리 또는 재활용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예치금대상품목 및 요율

예치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품목을 무엇으로 하며, 예치금요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당초 예치금 대상품목은 폐기물관리상 현실적인 규제의 필요성, 폐기물의 감량화 유인과 자원화 효과, 환경오염의 기여정도 및 유해성과 기타 폐기물 유발에 관한 국민감정, 행정관리 능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소비양태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7개 종류의 16개 품목이 결정되었다. 그 품목 및 예치금 요율은 별표와 같다.

그 동안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입법예고, 공청회, 관련부처간 실무협의, 경제 장·차관회의등 긴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당초 입법예고된 품목중 제외된 품목도 있고, 요율도 많은경우 인하 조정되었

다. 당초 이들 품목의 선정이나 예치금 요율 수준은 한국경제학회가 용역을 맡아 조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정 제시된 것이었다.

다른 법령이나 기존 체제에 의하여 회수·처리·재활용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자동차-자동차판

〈대상품목 및 예치금 요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음식료류·주류·화장품	가. 종이팩 ○ 250ml이하 ○ 250ml초과	개당 20전 개당 40전
	나. 금속캔 ○ 뚜껑부착 형 ○ 뚜껑분리 형	개당 2원 개당 4원
	다. 유리병 ○ 350ml이하 ○ 350ml초과	개당 2원 개당 3원
2. 살충제·부탄가스제품·유독물제품	가. 살충제용기 ○ 500ml이하 ○ 500ml초과	개당 20원 개당 30원
	나. 부탄가스 용기	개당 10원
	다. 유독물용기 ○ 500ml이하 ○ 500ml초과	개당 20원 개당 30원
3. 전 지	가. 수은전지	개당 100원
	나. 산화은전지	개당 50원
	다. 리튬전지	kg당 120원
	라. 망간전지 및 알카리망간전지	kg당 120원
	마. 니켈·카드뮴전지	kg당 120원
4. 타이어	가. 대형	개당 500원
	나. 중·소형	개당 150원
	다. 이륜차용	개당 50원
5. 윤활유	윤활유	ℓ 당 20원
6. 가전제품	가. 텔레비전	kg당 30원
	나. 세탁기	kg당 30원
7. 합성수지		판매가의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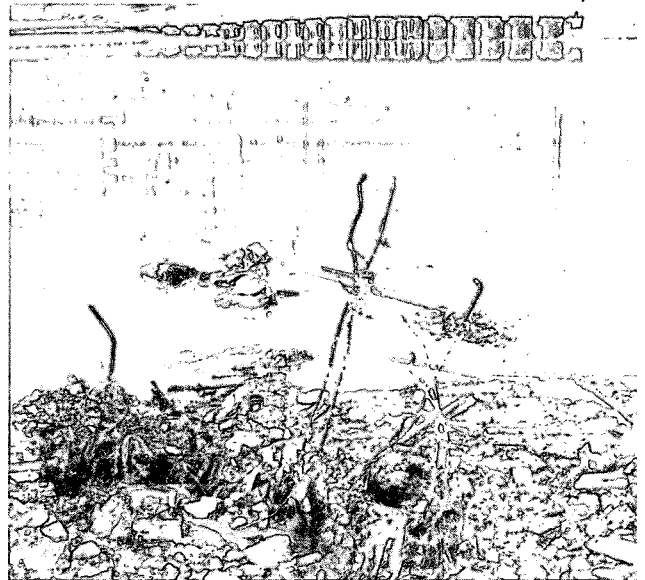
- 비고 : 1. 제4호 타이어의 경우 신규제작자동차에 부착되는 타이어외의 타이어에 한하여 부과한다.
 2. 제5호 윤활유의 경우 출고량의 65%에 한하여 부과한다.
 3. 제7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리법, 유리병-공병보증금제, 농약빈병-한국자원재생공사 수거 체제), 농민에게 부담이 갈 우려가 있는 경우(농기구 타이어 및 윤활유), 그리고 환경명목의 2중부담의 경우(에어콘, 냉장고-'92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인 CFC부담금 부과)는 예치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치금 요율도 주로 물가에 민감한 품목과 매출가와 대비하여 과중한 경우 인하 조정되었다.

3. 예치금의 결정 및 납부절차

가. 예치금의 납부

예치금의 납부대상품목의 제조업자가 매년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은 전년도의 당해제품 출고량에



대하여 예치금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은 당해년도에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 수량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품 제조업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제품 출고실적을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처장관은 3월말까지 예치금납부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예치금은 연초에 총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매수입시마다 그 수입량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수입업자가 스스로 산정하여 수입승인 신청시에 그 업자가 거래하는 외국환업무 취급은행에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기술상의 문제로 제조업자와는 달리 매수입시마다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였다.

나. 사업자단체를 구성한 경우의 예치금

예치금대상이 되는 같은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회수·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처리한 양만큼은 예치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단체를 구성코자 할 때에는 법인정관이나 단체협약 또는 조합규약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예치금의 환불

예치금을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년도에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의 양을 환경처장관에게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처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1월이내에 예치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반환예치금을 산정, 반환한다. 분기별로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조업자등이 회수·처리한 폐기물이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서 타인이 제조한 것의 경우에도 자기 제품을 회수·처리한 것으로 보아 예치금을 환불한다. 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회수·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환경처장관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4. 폐기물관리기금

예치금은 바로 폐기물관리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이 기금은 재활용폐기물의 구입, 비축, 예치금환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 기술개발,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처리등 폐기물의 재활용사업에 주로 쓰이게 된다.

이 기금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

게 된다.

5.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역할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의 농촌폐비닐이나, 농약빈병등을 회수하고, 재활용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폐기물관리기금에 의한 폐기물의 재활용사업을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91년도에 우선 17개의 폐기물 재활용사업소를 설치하고 '93년까지는 77개의 사업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6. 예치금제도의 효과

폐기물의 회수·처리 예치금제가 도입되면 시행 초기에는 기업에 다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켜 자원비용의 감소와 제조원가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매립장 수요의 감소 등으로 사회의 환경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생산기술의 개발에 노력하게 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극 회수·활용하므로써 새로운 고용창출은 물론 자원절약과 폐기물처리를 위한 비용감축 등으로 생산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과 기업간의 협조유대가 조성되고, 국민은 근검절약 정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이 납부한 예치금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50% 전가시 0.0028%, 100% 전가시 0.057%의 물가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간 예상되는 예치금의 총 규모는 450억원으로서 200억원 내지 300억원이 환불되고 150-250억원이 기금에 남아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사업에 쓰이게 된다.



예치금제도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폐기물의 수거·운송비용절감, 폐기물매립지 설치 및 관리비용, 폐기물의 자원화효과등 직·간접적효과는 연간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7. 결 어

특히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악성화되고 있으나, 협소한 국토공간, 한정된 정부재정 그리고 처리기술의 미흡에다 폐기물매립지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까지 겹쳐 폐기물처리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실로 오늘의 폐기물처리문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삼위일체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 예치금제도는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품의 생산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협조를 얻어 자기제품의 유통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당해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함으로써 한계에 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능력을 보완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정부는 정부대로 이 제도 본래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 대처하고, 또 기업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가는 일이 없는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폐기물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

제품의 생산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협조를 얻어 자기제품의 유통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당해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함으로써 한계에 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능력을 보완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